고용노동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18:00 (2026. 11. 4.(수) 조간)

상습체불사업주 777명,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

- 11.3(화)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
- 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명확한 경우 신용제재 등 조치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**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(위원장: 고용노동부 차관)를 개최**하여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**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**했다고 밝혔다.

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**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,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하여 2025년 10월부터 시행**되었다. 기존 명단공개, 신용제재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*를 대상으로 한 제재로써 **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** 체불을 **상습·반복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운 한계**가 있었다.

* 명단공개(3년간):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, 1년 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
신용제재(7년간):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, 1년 내 체불 총액 2천만원 이상

이에 **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** 하더라도 **체불을 반복*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신용제재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**를 함으로써 체불에 대한 **경각심을 제고**하고 **체불 피해를 줄여** 나가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.

*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(퇴직급여 제외), 5회 이상 체불 +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(퇴직급여 포함)

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**상습체불사업주 777명**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**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**되어 **대출 등의 제한**을 받게 된다. 또한, **국가, 지방정부의 보조·지원사업 참여도 제한**된다.

이번 결정은 직전 연도 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에 따라 **202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결정**된 것으로,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**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명**했으며 그럼에도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 대상자가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었다.

* **(선정 절차)** 대상자 추출 → 대상자 통지·소명(3개월 이상) → 소명자료 검토 →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→ 결정 통지·제재(1년)

2025년 기준 **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**하고 2026년 1월~8월 기준 **임금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.5% 감소**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, 정부는 **체불 범죄 근절**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* 체불 피해 노동자 수(만 명): ('21) 24.3 ('22) 23.3 ('23) 27.0 ('24) 27.6 ('25) 25.6

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"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, **상습 체불사업주**에 대한 신속·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, **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**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, 2026년 10월 시행), **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** 도입(2027년 1월 시행), **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** 등을 통해 **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**으로 해소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 아울러, "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**체불 사업장 전수 조사, 지방정부 협업**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붙임. 상습체불사업주 제도 개요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유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	강석원 (044-202-7529)
			주무관	김형신 (044-202-7548)

붙임 **상습체불사업주 제도 개요**

□ 상습체불사업주 요건(법 제43조의4)

○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**직전 연도 1년간**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

–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(퇴직급여 제외)

– 5회 이상 체불 +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(퇴직급여 포함)

□ 선정 절차

대상자 추출 ▶ 예고 통지 소명(3개월↑) ▶ 소명자료 검토 (제외사유) ▶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 ▶ 결정 통지 ·제재(1년)

□ (제재)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면 1년간 경제적 제재 부과

신용제재	정부 보조·지원 제한	공공입찰 불이익
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 제공	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보조·지원 사업 참여 제한	국가·지방계약 입찰 시 사전심사·낙찰자 결정 불이익

□ 명단공개·신용제재와 비교

구 분	명단공개 (근로기준법 제43조의2)	신용제재 (근로기준법 제43조의3)	신설 상습체불사업주 (근로기준법 제43조의4)
요 건	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 내 3천만원 이상	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 내 2천만원 이상	**유죄 확정 요건 없음** 직전 연도 1년간 ①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②5회* 이상 체불+3천만원 이상 *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
근로기준법상 제 재	인적사항·체불액 공개, 출국금지 (+정부 사업 지침 등에 따라 보조·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)	신용정보원 체불자료 제공	**신용정보원 체불자료 제공 + 보조·지원 제한 + 공공입찰 불이익**
기 간	3년	7년	1년